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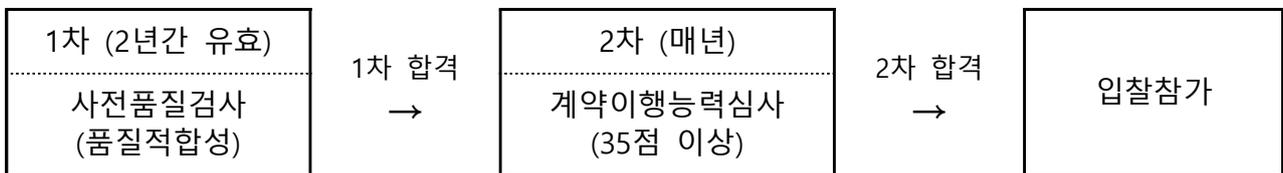
“제주삼다수 및 휘오제주” 제품생산용 원·부자재 품질테스트 안내 공고

제주삼다수 및 휘오제주 제품생산용 원·부자재 품질테스트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 있음을 공고 합니다.

1. 건명 : “제주삼다수 및 휘오제주” 제품생산 원부자재 품질테스트 공고

2. 목적 : 2019년 납품을 위한 물품 제조·구매 입찰 참가를 위한 1차 자격 부여

- 1차(품질테스트) 합격, 2차(계약이행능력심사) 35점 이상인 경우 입찰 참가 가능



3. 관련법령 및 규정

가.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

나. 우리공사 회계규정 제199조 제2항 및 제3항

다.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하여는 『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』 제8조(경쟁입찰 참여자격)의 중소기업자로서, 동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발급된 해당제품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와 『중·소기업·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』에 따라 발급된 중·소기업·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.

- 단,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하는 특별법인은 중·소기업·소상공인확인서 불필요

라. 상기사항에 대한 품질검사를 받아야 하는 원·부자재는 아래와 같음

-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(원부자재) : 제3호 '가'~'다'목 참조

품명 (물품분류번호)	세부품명	자재명
골판지상자 및 판지상자 (2411250101)	골판지상자	반코팅 파레트간지
폴리에틸렌필름 (1311120101)	폴리에틸렌필름	파레트용 필름, 탑시트용 필름, 수축필름(일반, 분할), 스트레치 후드필름, 캡·프리폼 저장용 비닐백
플라스틱팰릿 (2411270201)	플라스틱팰릿	수출용 파레트
기타인쇄물 (5510159901)	기타인쇄물	손잡이 패드



- 일반 제품(원부자재) : 제3호 '가'~'나'목 참조

1) 병 제조용 자재(PET CHIP)	2) 캡 제조용 자재(HDPE CHIP)
3) A.A 소거제	4) 상표(규격별로 구분)
5) 접착제(상표용)	6) 손잡이테이프
7) 습식 체인컨베이어 윤활제	8) 건식 체인컨베이어 윤활제
9) 기타 우리공사에서 품질검사를 받아야 된다고 인정되는 물품	

※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일부 원부자재는 제한입찰이 가능하며, 우리공사 사업계획 및 상황에 따라 추가 품목이 발생할 수 있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
4. 품질테스트 절차

가. 절차

- 1) 검사의뢰(품질테스트 의뢰서 및 시험성적서 접수)
 - 검사의뢰서는 공문 형식에 품질테스트 자재명과 샘플수량을 기재하여 요청
- 2)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(원부자재)에 대하여는 별도의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함.
 - 가) 직접생산확인증명서
 - 나) 중·소기업·소상공인확인서
- 3) 우리공사 수입검사부서(품질관리팀)에서 제시하는 샘플 수량 무상 납품
- 4) 우리공사 수입검사부서(품질관리팀) 자체 품질테스트 의뢰

※ 검사 의뢰 샘플 반납 불가, 검사 후 폐기

- 5) 테스트 결과 회신(테스트 적합시 합격서 교부 - 발행일로부터 2년간 유효)

※ 테스트 공고 기간내 3회 부적합판정을 받은 경우는 공고일이 속한 당해년도에 더 이상 검사의뢰를 할 수 없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.

나. **테스트 소요기간 : 최소 30일 이상**

다. 테스트 의뢰 기간 : 테스트 공고일자로부터 2018년 9월 30일限 도착기준(테스트 요청횟수 3회 포함), PET CHIP, HDPE CHIP, A.A소거제, 접착제(수분리성)는 2018년 8월 31일限 도착기준

※ **상기 기간을 초과하여 테스트 의뢰시 테스트 소요기간 및 계약이행능력심사로 인하여 당해 입찰 참가자격은 제한됩니다.**

※ 샘플은 우리공사 자가품질규격 및 설비적용에 적합하여야 하며, 품질규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공사와 사전 협의 하여야 합니다.

※ **합격서를 교부 받았더라도 품질이상 발생시, 우리공사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(규격변경, 합격일과 납품시작일의 공백이 길 경우 등) 재테스트를 받아야 하며, 관계 법령 개정 및 우리공사 사정에 의거 입찰 참가 자격이 취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**



※ 사전품질검사제도 계약이행능력심사 병행 운영(매년 시행)

5. 입찰에 관한 사항

가.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자격을 갖춘 자

나.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우리공사 입찰참가자격을 득한 자

※ 품질테스트 및 계약이행능력심사 안내공고에 의거 우리공사 사전품질검사(품질테스트 및 계약이행능력심사)에 합격한 자를 의미함

다.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경우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(경쟁입찰 참여자격)의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 및 동법 제9조 및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를 보유하고 있는 자

※ 중소기업·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구축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(<http://smpp.go.kr>)을 통해 확인하며, 입찰참가신청 마감일전에 등록된 것으로서 유효기간내에 있어야 함
라. 예상 발주수량 및 시기 : 붙임 "원부자재별 예상 발주수량 및 시기" 자료 참조

6. 기타

가. 동 공고사항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우리공사 홈페이지(<http://www.jpdc.co.kr>)에 게재(알림마당/입찰정보)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나. 향후 입찰 시에는 물품구매사양서와 함께 품목별 계약특수조건 및 물품계약일반조건이 첨부되는 바, 해당 사항에 대한 검색 및 검토는 과거 입찰정보에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
다만, 계약특수조건 내용(단가계약, 납품방법, 현장점검, 계약의 해지·해제 등)과 물품계약일반조건(행정안전부 예규,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)은 실제 입찰 시 관련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.

다.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.

7. 정보 제공

가. 품질테스트 접수 문의 : 설비자재팀 탁윤(064-780-4671)

나. 품질규격 및 테스트 관련 문의 : 품질관리팀 오용석(064-780-4692)

다. 계약이행능력심사 및 입찰 관련 문의 : 구매팀 김경만(064-780-3411)